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AI 국세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하는 AI업무혁신팀을 신설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세무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에 각각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및 세무주사보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15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3명(세무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7명(세무주사 16명, 세무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세무주사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정원 2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

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을 감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사무운영서기보 17명, 전화상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세무서기보 19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0. 22~ 10.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을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 및 AI업무혁신팀장”으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 AI업무혁신팀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AI업무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세상담센터 AI상담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2. 세무서 AI상담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제32조제4항 단서 중 “109명(6급 49명)”을 “107명(6급 47명)”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행정사무관 “117”을 “118”로, 전산사무관 “16”을 “17”로, 세무주사 “241”을 “240”으로, 전산주사 “42”를 “41”로 한다.

별표 10 중 세무서기보 “3,596”을 “3,615”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8”을 “1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303”을 “286”으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199”를 각각 “20,197”로, 세무주사 “4,366”을 “4,364”로, 세무서기보 “3,596”을 “3,615”로, 전화상담운영서기

보 “18”을 “1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303”을 “286”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5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4년 11월 15일까지”를 “2027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부칙 제4조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중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명”을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1명”으로 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75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AI업무혁신팀은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AI업무혁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AI업무혁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빅데이터센터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1월 1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 (생략)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빅데이터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u>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 및 AI업무혁신팀장 ----- ----- <u>서기관</u> , AI업무혁신팀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
③ ~ ⑧ (생략) <u><신설></u>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AI업무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세상담센터 AI상담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2. 세무서 AI상담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	④-----.

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u>109명</u> (6급 49명, 7급 3명, 8급 57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 ----- ----- ----- ----- 107 명(6급 47명)-----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관리팀은 <u>2024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u>2027년 12월 31일까지</u> ---- --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제3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은 <u>2024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 ----- ----- <u>2027년 12월 31일까지</u> ----
기획재정부령 제75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5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및 세무주사보 1명과 별표10의2의 세무주사보 1명은 <u>2024년 11월 15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 ----- -- <u>2027년 11월 15일까지</u>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1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② ----- -----

신·구정원대비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117</u>	<u>118</u>	+1
·	·	·	
·	·	·	
전산사무관	<u>16</u>	<u>17</u>	+1
세무주사	<u>241</u>	<u>240</u>	-1
·	·	·	
·	·	·	
전산주사	<u>42</u>	<u>41</u>	-1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세무서기보	<u>3,596</u>	<u>3,615</u>	+19
·	·	·	
·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18</u>	<u>16</u>	-2
·	·	·	
사무운영서기보	<u>303</u>	<u>286</u>	-17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199</u>	<u>20,197</u>	-2
일반직 계	<u>20,199</u>	<u>20,197</u>	-2
·	·	·	
·	·	·	
세무주사	<u>4,366</u>	<u>4,364</u>	-2
·	·	·	
·	·	·	
세무서기보	<u>3,596</u>	<u>3,615</u>	+19
·	·	·	
·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18</u>	<u>16</u>	-2
·	·	·	
사무운영서기보	<u>303</u>	<u>286</u>	-17
·	·	·	